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0 -12

제안연월일 : 2000. 4. . 제 안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사유

-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며,
-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함(안 제3조 및 제 41조의2 내지 41조의5)
- 군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법적근거가 없어지므로 위원회 의 기능을 통합함(안 제9조)
-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 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수 시부과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22조의2)
-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 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0조)

-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 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함(안 제47조)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함(안 제61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이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5년간의 유 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 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함(안 부칙 제2항)

□ 개정근거

- 경상남도세정 13400~11242호('99.12.9)
- 경상남도세정 13415~11275호('99.12.16)
- 법률 제6060호 (99.12.28)
- 대통령령 제16673호 (99.12.31)
- 행정자치부령 제81호 (99.12.3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내지 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로 하며, 동조제6항중 "위원회및 각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할, 소 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 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 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

- 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 제40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1,000원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장에 제3절의2(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 제41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 제41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 제41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 필증사본
-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 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과세표준 》	《 세 율 》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72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 초과	1,872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6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제3조(세목)	제3조(세목)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2
같다.	
1. 주민세	1.~3. (현행과 같음)
2. 재산세	<u>4. 주행세</u>
3. 자동차세	5.~8.(현행 4.~7.호와 같음)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 (생략)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삭 제>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	
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ㆍ의	
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	
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 의결로 본다.	③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
③ 위원회는 <u>위원장 1인과 부위원</u>	
<u>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u>	<u> </u>

현 행	개 정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	⑥ <u>위원회</u> ······
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신고납부)	제22조(신고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	2 · · · · · · · · · · · · · · · · · · ·
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	
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u>날부터 30일이내</u>	····· <u>날까지</u> 제22조의
<u>에 군수에게</u>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삭 제>
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	
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u>자가 제1항 또는 제2항</u> 규정에 의	
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	
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	

현 ŏ	9	개 정
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형	한 금액을 세	
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의 방법에 의	
하여 징수한다.		
	<u><신 설></u>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
		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
		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
		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u>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
	<u><신 설></u>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
		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
		여 소득세를 신고 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
		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
		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
		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
		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
		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
	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
	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
	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
	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
	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
	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신)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 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u> 설>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현 행	개 정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
	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
	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
	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 <u>1항 및 제2항</u> 의 규정에 의	<u>④ 제1항 내지 제3항</u> ·····
하여 계산한 세액이 <u>1,000원 미만</u> 인	····· <u>2,000원 미만</u>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
<u><신 설></u>	제3절의2 주행세
<u><신 설></u>	제41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
	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u>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u>
	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
	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
	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
	<u>과한다.</u>
<u><신 설></u>	제41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
	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의 32로 한다.
	<u><</u>	신 설>	제41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
			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
			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
			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
			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	신 설>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

현	행			개		정		
			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	액과	자체
			<u>징수한</u>	전월분	분 주	행세액을	을 합	<u>년</u> 세
			액을 밭	제1	96조	의18제3	항의	규정
			에 의하	<u> </u>	ਪੀ • ਜੁ	별로	안분힌	- 후
			동조동형	상에서	정힌	· 기한까	가 지 급	그 금
			고에 납	·입함되	가 동 <i>,</i>	시에 그	. 안분	내역
			서를 군	에 통.	보하여	려야 한다	} .	
					·			
제47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	·] ス	세47조(세	율)…	• • • •			
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역	백(이하 "산출서	1						
액"이라 한다)으로 현	난다.					٠.		
과세표준 /	에 율		과세표	[준		세	율	
<u>400만원 이하</u> 과세표준	·액의 100분의 <u>3</u>		400만원 여	기하	과세표	도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400만원 최			일+400만원		
	<u>100분의 16</u> +1,000만원 초과		<u>1,000만원</u> 1,000만원			<u>의 100분의</u> 원+1,000만		}
<u>2,500만원 이하</u> 금액의 1	100분의 27		4,000만원	이하	금액의	의 1 0 0분의	20	
	<u>+2,500만원 초과</u> 100분의 38		<u>4,000</u> 만원 <u>8,000</u> 만원	<u>소</u> 바 이하	6/2만 금액의	원+4,000년 기 100분의	<u>간원 소</u>] <u>30</u>	<u> </u>
	년+5,000만원 초과 100분의 <u>50</u>		8,000만원	초과		관원+8,00 리 100분의		초과
제61조(신고납부 등)			제61조(신.	고납부	- 등)			
①・② (생략)			1.2	(현행3	과 같	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3					
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	한 안분기준에							

현 행	개 정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	
에 납입하여야 한다. < <u>후단신설></u>	····· 이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
	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
	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생략)	<u> </u>
	(한영의 원리)